

「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 근거 마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,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6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사회복지 시설,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특수교육관련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, 위탁업무 지도 및 관리·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.